

國際貿易學碩士 學位論文

중국의 가공무역제도 정책변화와
한국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the strategy of Korean exporting
companies to China's processing trade



2012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國際貿易學科

高 暢

本 論 文 을 高 暢 의 經 營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認 准 함

委 員 長 鄭 鴻 悅 인

委 員 金 賢 碩 인

委 員 李 秀 昊 인



2011年 12月

한국국립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제2장 중국 가공무역제도 개관.....	4
제1절 중국 가공무역의 변천.....	4
제2절 중국 가공무역제도 종류.....	9
제3절 중국 가공무역의 제도적 특징.....	14
제3장 중국 가공무역제도 특징과 문제점.....	26
제1절 중국 가공무역제도의 특징과 발전 원인.....	26
제2절 중국 가공무역의 문제점.....	29
제4장 중국 가공무역제도와 한국 수출기업의 관계.....	33
제1절 한국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33
제2절 한국수출기업의 대응전략.....	35
제 5 장 결론.....	38

<표 목차>

<표2-1> 중국 가공무역액 연도별 변화.....	6
<표2-2> 일반적인 내료가공과 광동식 내료가공 비교.....	12
<표2-3> 내료가공과 진료가공의 특징 비교.....	13
<표2-4> 증치세 환급률 인하 품목.....	17
<표2-5> 가공무역 금지품목.....	20
<표2-6> 중국 전체 수출입 중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비중.....	21
<표2-7> 가공무역 수입 제한 상품.....	22
<표2-8> 기업의 분류 기준.....	24



<그림 목차>

<그림2-1>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출비중 변화.....	9
<그림2-2>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입비중 변화.....	9



국문초록

지난 10여 년간 한·중 교역과 투자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기인한다. 지리적 근접성, 산업 및 기술 발전단계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보완성,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지속,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 등의 요인이 양국 간 경제 관계 발전을 이끈 중요한 환경적 요인 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은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 여건이 변화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은 보다 선별적인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경쟁 및 보완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원재료, 부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 조립한 소비재를 한국 등 제 3 국에 수출하는 지금의 무역 방식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수출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수출관련 대내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공무역 금지품목 지정,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정책에 있어서 몇몇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에는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을 인하한데 이어 11월에는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가공무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공무역정책, 경험, 성과를 분석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공무역의 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한국수출기업과 중국 현지에서 가공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한국 기업인 입장에서 해결책과 보안방법을 제시해 본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서방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대외 개방, 경제 특구지역 지정,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우대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더불어 인구 12억 6천만에 달하는 거대한 중국의 시장잠재력과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불러 왔고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간접 투자가 증가 했다.

90년대 초반부터 세계경제의 상승세에 이어 다시 국제적 산업구조의 전환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이용하여 중국의 가공무역의 발전은 전략적이며 대표적인 산물이 되었다. 2004년 중국가공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체 수출입 총액의 55%로 비약하였으며, 일반무역 수출입 총액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가공무역의 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그 가공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준 또한 향상되었으며 가공무역은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적이며 중요한 촉진 작용을 해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전반적인 무역 관리 제도 및 정책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요구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대외무역 관리 체계 개혁의 중점을 국내제도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국내산업과 수출산업간의 융합 발전, 그리고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 실현 등 조화와 균형에 중점을 둔 무역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통상 압력 및 위안화 절상 압력 완화, 외환 보유액 급증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해결, 과잉 생산구조의 개편,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자원보호 필요성,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수출정책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수출정책 수정의 목적은 수출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가공무역 금지품목 지정, 수출에 대한 增値稅(부가가치세)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등 상·하향조정, 자원형 상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세 부과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6년 9월 수출에 대한 증치세환급률을 인하한데 이어 11월에는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출세를 인상하는 등 수출규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가공무역이 IT 및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수출관련 규제조치 강화 품목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공무역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수출규제 대상품목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인 경공업 제품으로 확대될 경우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무역흑자 축소 및 대외 통상압력 완화 등 중국의 제2산업 도약을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가공무역 및 增値稅(부가가치세)에 대한 중국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선 중국가공무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공무역 정책, 경험, 성과를 분석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공무역의 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한국수출기업과 중국 현지에서 가공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한국 기업인 입장에서 문제점 해결책과 보안방법을 제시해 본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중국의 가공무역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에 이용하게 된 계기 및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정책 즉, 증치세제도, 은행보증금제도, 가공무역제한제도를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현황 그리고 가공무역 변화를 통계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여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변화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변화가 한국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들인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연구는 논의될 연구 항목들에서의 문제점 제기 및 해결책 도출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종합하여 상호 비교분석 함으로써, 본 연구의 성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

2. 연구구성

본 연구는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과정, 정책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 제시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그리고 구성에 관하여 논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중국 가공무역의 발전변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살펴보고, 가공무역제도의 종류 및 제도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3 장에서는 중국 가공무역제도 특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 4 장에서는 중국 가공무역제도와 한국 수출기업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 5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맺었다.

제 2 장 중국 가공무역제도 개관

제1절 중국 가공무역의 변천

1. 도입기

중국의 1957년 가공무역을 통한 무역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¹⁾이 시기 중국의 가공무역은 소규모로 일부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정부산하의 국영무역회사가 독점적으로 가공무역기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가공무역은 1966년 문화혁명을 계기로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이전까지 중단되었다.

1978년7월 중국 국무원은 ‘대외가공조립업무 실험적 실행조치’²⁾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가공무역 장려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동 실행조치에 따라 중국 정부는 광둥성, 복건성, 상해시 등의 연해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가공무역을 위해 개방하게 되었다. 중국 국무원은 1년여의 실험기간을 거쳐 1979년9월 ‘대외가공조립 및 중소형 구상무역 조치’³⁾을 공포하고 전면적인 가공무역확대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규모는 14.2억 달러로 동년 중국 총 수출액 180.5억 달러의 7.9%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런 정책의 추진 아래 중국 가공무역은 광둥성, 복건성 등 남부 연해 지역에서 중, 북부 연해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발전되었다. 또한 가공무역 품목도 다양화 되어 의류, 섬유, 완구, 신발, 전자제품, 플라스틱 그리고 공예품 등의 분야로 확대 되었다.⁴⁾

2. 성장기

1980년대 후반 주변 신흥공업국들인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등은 환율 하락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노동집약형산업 경쟁력이 점진

1) 顾建清, 「中国加工贸易研究」, 复旦大学出版社, 2008, p.10

2) 1978년7월“开展对外加工装配业务试行办法

3) 1979년9월“开展对外加工装配和中小型补偿贸易办法

4) 顾建清, 전계서, p. 12

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 시기 대외자본의 중국 연해지역 투자를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자본 유인정책으로는 1986년 10월 국무원이 공포한 ‘해외기업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⁵⁾ 1978년 9월 대외경제무역부가 공포한 ‘내료가공조립 등의 업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확보에 관한 지시요청서 통지’⁶⁾, 그리고 1992년 7월 중국 해관총국이 공포한 ‘외국투자기업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독 및 과세·면세방법’⁷⁾ 등이 있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자본 유인정책 및 대외무역환경의 변화로 가공무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해외자본 유인정책에 따라 중국의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1986년 중국의 가공무역액 비중은 무역액 대비 16.6%, 123억 달러이었으나, 1992년에는 42.9%, 712억 달러로 6년 사이에 무려 5.8배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991년 중국의 가공무역기업 수는 4만 여개 기업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중 2만 여개 기업은 관동성에 집중되었다.⁸⁾

3. 성숙기

1992년 중국 덩소평(邓小平)의 남순강화(南巡讲话)⁹⁾를 통해 확고한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체제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중국의 가공무역 분야도 더욱 공고히 되는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9년 중국 천안문사건 및 1991년 구소련의 붕괴 등의 불안요소들로 인하여 중국에 이미 투자를 한 기업들은 추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있

5) 1986년 10월 “关于鼓励外商投资的规定.”

6) 1987년 9월 “关于抓住有利时机进一步发展来料加工装配等业务请示的通知.”

7) 1992년 7월 “对外商投资企业进出口货物监督和征免税办法.”

8) 江華·黎国林, “我国加工贸易产业结构升级研究”, 「商业研究」, 总第387期, 2009, 7, pp.133-134.

9) 중국 덩소평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중국 우한, 선진, 주해, 상해 등을 시찰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덩소평의 이러한 남부지역 순시는 동년 2월 28일 중국 공산당 기본정책으로 강령강제력을 지닌 중반(中发)2호 문건으로 지정되어 거대적 선전학습활동이 개시되었다. 즉, 덩소평은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확고한 시장경제 도입 의지를 밝힌 것이다.

던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은 다시 외국의 투자를 불러들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의 대외개방과 외자유치정책으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등의 노동집약형 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이전이 본격화 되었으며,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의 다국적기업도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국제적 산업분업, 협력영역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중국의 1992년 가공무역액 비중은 무역액 대비 42.9%, 712억 달러에서 2003년 47.6%, 4,048억 달러로 11년 사이에 5.7배 증가하였다. 다만 과거 성장기에 비해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비중의 급격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표2-1> 중국 가공무역액 연도별 변화

단위: 억 달러

년도	무역액	가공무역액	비중(%)
1981	440.2	24.8	5.6
1982	416.2	35.2	8.3
1983	436.1	42.2	9.5
1984	535.5	58.4	10.8
1985	696.0	75.4	10.7
1986	738.4	123.2	16.6
1987	826.5	191.9	23.2
1988	1,028.0	288.5	28.0
1989	1,116.8	361.6	32.3
1990	1,154.4	441.9	38.2
1991	1,356.3	574.9	42.2
1992	1,655.3	711.6	42.9
1993	1,957.1	806.2	41.2
1994	2,367.3	1,045.5	44.2
1995	2,808.5	1,320.8	47.0
1996	2,899.0	1,465.0	50.6
1997	3,251.6	1,698.1	52.2
1998	3,239.3	1,730.1	53.4
1999	3,606.5	1,844.6	51.1
2000	4,742.9	2,302.1	48.5
2001	5,096.5	2,414.1	47.4
2002	6,207.7	3,021.3	48.7

2003	8,509.9	4,047.6	47.6
2004	11,545.5	5,496.6	47.6
2005	14,219.1	6,904.8	48.6
2006	17,606.9	8,318.8	47.2
2007	21,738.4	9,860.5	45.4
2008	25,616.4	10,535.8	41.1
2009	22,072.2	9,093.2	41.2

자료: 중국통계연감 및 중국대외무역통계연감

4. 쇠퇴기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을 우대하고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가공무역은 세계 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중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차원을 넘어서 해외시장과 수출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가공무역에 대한 우대정책에 힘입어 1981년 24억 8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가공무역 규모는 2003년 4,047억 6천만 달러로 163배 증가하면서 중국의 교역 확대를 주도해 왔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내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무역흑자가 통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구조가 중국산 브랜드의 육성을 저해하고 중국 기업들을 외국기업의 단순한 하청공장으로 전락시킨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해 중국은 2004년부터 가공무역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대진대출’¹⁰⁾(大进大出)전략을 포기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¹¹⁾ 이러한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다음 몇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환경오염 대책 필요성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5년부터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과 환경오염 유발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 규정을 지속 발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원보존을 위하여 국내 자원의

10) 많이 수입하고 많이 수출한다는 의미.

11) 양평섭, “중국,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가공무역으로 단순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것 우려”, 「Chindia Journal」, 2007. 1, p.8

해외반출을 제한하는 한편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품의 국내 임가공 목적의 반입을 엄격하게 줄여나가고 있다.¹²⁾

둘째, 비효율적인 과잉생산능력 조정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내 무분별한 생산확대로 원재료와 에너지의 부족과 함께 국내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¹³⁾

셋째, 첨단사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일부 IT 및 바이오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환급율을 인상하고 일부 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등 첨단 분야의 생산 및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 2월 중국 국무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임시규정,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발표하고 향후 산업정책의 중심의 산업구조조정임을 시사하고 있다.¹⁴⁾

넷째,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부담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¹⁵⁾ 중국은 2008년 2,974억 달러의 기록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외환보유고는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호조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 말 기준 2조 3,9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섯째, 통상마찰 및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¹⁶⁾ 2008년 중국의 대미국 무역흑자는 2,68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5년 2,023억 달러 대미국 무역흑자 이후 5년 연속 2,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지속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가공무역 수출비중 확대로 중국의 실익은 없으면서 수출액 급증으로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과 위안화 평가절상의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과 EU의 통상압력에 대응하여 증치세와 가공무역 금지목록 조정이 환율절상보다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통제력이 높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2) Kotra,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기획조사06-065, 2006.11, p.7.

13) 头瑞林, “对后危机时机我国加工贸易发展的几点思考”, 「中国经贸」, 2009年第11期,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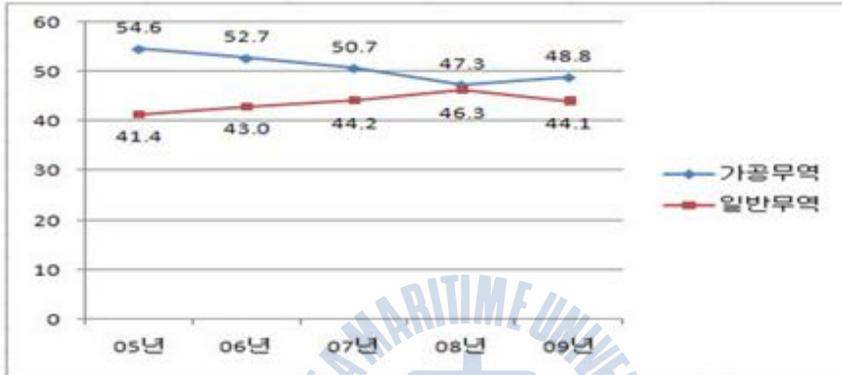
14) 이승진 · 양평섭,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9, No.11, 2009.4, p.9

15) Kotra, 전계서, 2006.11, p.8.

16) 양평섭,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한국 대중 수출입 돌파구는—중서부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고 내수 시장 뚫어라”, 「Chindia Journal」, 2008.6,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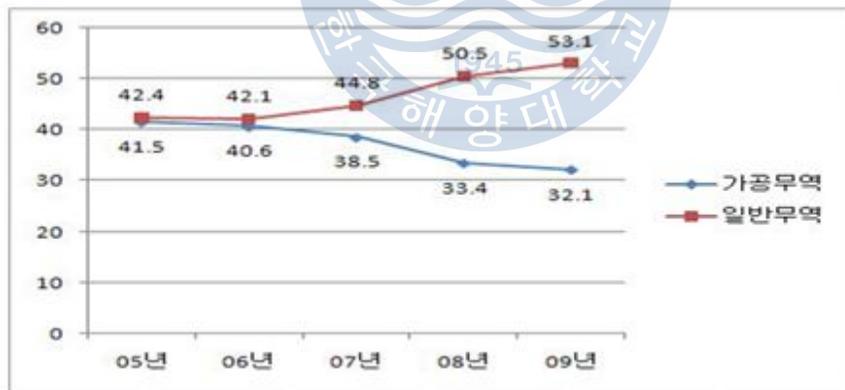
상기와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정책변화는 중국의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점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결과는 가져왔다. 즉, 2004년 가공무역액 비중은 무역액 대비 47.6%, 5,497억 달러에서 2009년 41.2%, 9,093억 달러로 비중을 6.4%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2-1>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출비중 변화



자료: 중국해관 통계

<그림2-2>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입비중 변화



자료: 중국해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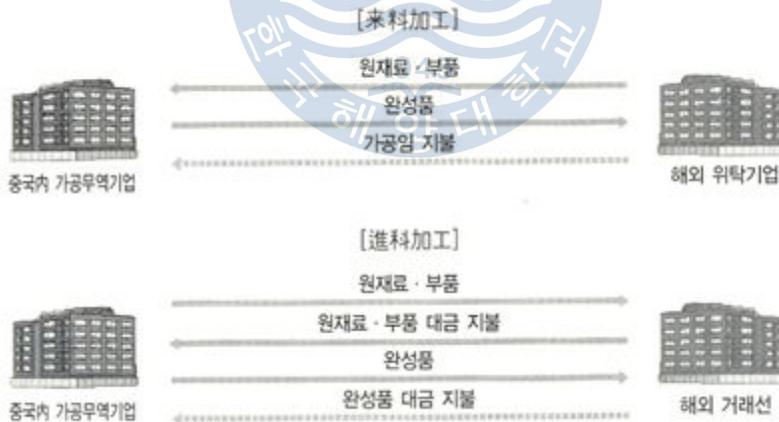
제 2 절 중국 가공무역제도 종류

가공무역은 중국내 기업(외자기업 포함)이 해외로부터 보세상태로 수입한 원료(原料), 재료(材料), 부품(零部件)과 포장재(包装材)(이하 「원재

료」라 칭함)를 이용하여 가공, 또는 조립을 행한 후 재수출하는 무역형태를 일컫는다. 한국은 수입자재에 대해 세금을 선(先)납부한 다음, 가공한 후 재수출할 때 환급이 이루어지나, 중국은 「재수출을 전제로 한 원재료의 수입은 면세」라는 특유의 유연한 가공무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공무역용 원재료는 면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완성품으로 제조되어 재수출 될 때까지 세관의 등기수책제도를 통해 보세화물로서 엄격히 관리된다.

가공무역은 가공임만을 수령하는 단순 임가공이나,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고 그 차액을 가공수입으로 하는 매매방식 가공이나에 따라 「내료(來料)가공 내도(來到)재료가공과 「지료(進料)가공 수입(輸入)재료가공」으로 구분된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은 내료·진료가공을 병행할 수 있지만, 진료가공의 경우 해외 원재료의 용이한 조달, 본국 모(母)기업의 원재료 수출 실적확보, 원재료단가의 조정을 통한 합법적인 이익금 이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료 가공보다 이용률이 훨씬 높다.



1. 내료가공(위탁가공):

내료가공은 해외 위탁기업이 중국내 가공공장에 임가공을 주는 방식이다. 내료가공은 원재료수입과 가공제품 수출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중

국에 있는 원재료, 완성품의 소유자는 해외 위탁기업이 된다. 내료가공방식은 무상거래의 특성상 가공물량이 커질수록 비즈니스 리스크가 높아지게 된다. 내료가공은 보세원재료의 재고관리, 생산품질관리, 납기가공임조정 등 문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적인 위탁가공(외국기업—중국가공기업)형태 보다는 해외 모(母)기업과 중국자(子)회사간, 또는 자사(自社)공장처럼 운영이 가능한 내료가공공장을 이용하여(광둥성에서는 진·촌(镇·村) 정부 산하법인 명의를 빌어 공장운영가능)가공무역을 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내료가공은 한국에서 원재료 공급 시수출면장상 임가공용 자재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진료가공에 비해 L/C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수입: 내료가공으로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 수입허가증 취득 면제(단,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등 다섯 가지 원재료 제외)

■ 수출: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증의 취득면제(단, 쿼터관리 품목은 제외)

■ 면세: 실제 통관 수출된 완성품에 사용된 원재료분에 대해 관세·증치세 면제. 수출 미이행 분에 대해서는 관세·증치세 추징

■ 내수판매: 원칙적으로 불허(단, 가공계약 취소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세관허가를 얻어 세금 납부 후 가능). 중국내 판매가 필요한 제품은 일단 홍콩으로 수출 후 재수입 수속 필요. 광둥성의 경우, 「전창」17)제도를 이용해 가공무역기업간에 보세화물 형태로 국내거래 가능(각공장의 홍콩법인간에 대금결제시행)

■ 증치세: 원재료, 완성품의 소유권이 해외 위탁기업에 있고 가공임만 받는 무역거래이므로 증치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가공임: 증치세 미부과

○중국 현지자재: 매입증치세의 「공제·환급」이 인정되지 않음

■ 현지조달 자재: 원칙적으로 세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나, 증치세 환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없이 무자료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흔함

■ 가공기한: 원재료 수입일자부터 1년 이내에 가공 생산하여 전량 수출

17) (주)전창(转厂:공장이동):최종수출을 전제로 한 중국내 가공무역기업간 보세화물의 소유권이전 가공(각자의 관할세관을 경유해 서류상 수출입수속 필요)을 의미한다.세관용어는 「심가공결전(深加工结构)」이나, 광둥성에서는 관행상 「전창」으로 통칭되고 있다.

의무.

「광동형 내료가공」 방식

가공무역의 메카인 광동성에서는 외국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진·촌(镇·村)정부 명의로 등록된 공장을 임대하여 자사공장과 마찬가지로 운영하면서 내료가공을 행하는 「광동형 내료가공」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광동성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약 70~80%는 번거로운 직접투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내료가공공장 형태로 간편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2-2>일반적인 내료가공과 광동식 내료가공 비교

광동식 내료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중국기업간 위탁가공계약체결. • 외국기업 제공 원재료를 중국 위탁기업이 생산가공. • 가공 후 제품 전량을 외국위탁자에 재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이 홍콩에 현지법인 설립. • 홍콩현지법인은 중국진·촌정부 설립법인과 위탁가공계약 체결 및 내료가공공장 임대. • 공장의 운영, 생산 등 경영권을 위임받는 보충계약체결 및 공장경영권 장악. •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원재료를 중국에 설립한 내료가공공장이 가공. • 가공 후 제품 전량을 홍콩법인에 재수출.

2. 진료가공 (보세가공):

진료가공은 외자기업 등 중국내 제조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유상으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제조한 완성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보세가공수출」의 성격의 무역형태다. 진료가공용 원재료 보세로 수입되며 전량 재수출되어야 관세·증치세가 면세된다.

중국진출 한국 업체의 경우 진료가공형태가 많은데, 그 이유로는

- ① 본사업장에서 원재료수출시 수출실적 확보 가능.

② 원재료 단가의 조정을 통한 합법적인 이익금 이전 가능.

③ 본사업장에서는 일반무역과 마찬가지로 중국공장으로 원재료를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무역형태이기 때문에 내료가공에 비해 업무처리가 간단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진료가공은 기본적으로 수입과 수출이 독립된 거래이므로 수입·수출 거래선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제품의 내용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가공에 따른 손익 또한 스스로 책임진다.

■ 수입: 진료가공으로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 수입허가증 취득 면제함(단,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등 5종 원재료 제외)

■ 수출: 수출허가증 및 쿼터관리품목의 경우 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면세: 실제 통관 수출된 완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분에 대해 관세·증치세 면제. 수출 미이행 분에 대해서는 관세·증치세 추징

■ 내수판매: 세관의 사전 허가 조건으로 원재료 수입량의 30% 내에서 관세·증치세 납부 후 내수판매 가능. 단, 투자 진출시 장려품목, 또는 100% 수출형 기업(제한품목)으로 분류되어 설비를 면세로 수입한 경우, 설비면세 요건인 5년의 기간의 경과해야만 내수판매 가능. 그러나 내수판매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보세 수입원재료로 수출과 내수판매 병행시, 등기수책과 재고관리가 어려우므로 내수판매분은 일반무역형태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증치세: 원재료, 완제품의 소유권이 가공기업에 있으므로 내료가공과는 달리 수출시 증치세의 「면세·공제·환급(免低退)」¹⁸⁾방식이 적용되며, 부가가치 발생분(수출액—원재료수입액)에 대해 불(不)환급액(예:징세율17%—환급율13%=4%)만큼 원가부담이 발생함.

■ 현지 조달자재: 총 소요 원재료의 55% 한도 내(內)에서 현지 자재 사용가능. 증치세 영수증이 있으면 매입 증치세 공제·환급 가능함(단, 환급율 하향조정으로 불(不)환급액 만큼의 원가부담 발생).

18) (주)면세·공제·환급(免低退)방식: 「免」 稅는 생산수출제품의 생산 및 판매과정중 발생하는 증치세는 면세하는 것을 의미. 「抵」 稅는 생산수출제품에 대해서는 환급해야 하지만 생산제품을 내수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환급해야 할 증치세액(원자재 구입시 이미 납부한 증치세)으로부터 내수판매제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증치세를 공제하는 것을 의미. 「退」 稅는 생산수출제품이해기업의 당기간전체 화물 판매액의 50%이상을 차지할 때, 1분기내에 이미 납부한 증치세 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수출제품이 당기간 전체 화물 판매액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분이 있더라도 환급해 주지 않고 다음분기도 이월하여 공제.

■ 가공 기한: 원재료 수입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공 생산하여 제품 수출 의무.

<표2-3> 내료가공과 진료가공의 특징 비교

내료가공(수탁 가공기업)	진료가공(외자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금(외화) 불필요 • 외국기업측이 원재료를 무상공급 • 원재료, 완성품의 소유권은 외국기업 보유 • 외국기업측 요구대로 가공조립 생산 • 외국기업측 책임 하에 완성품판매 • 가공임만 수령. 손익에 대한 책임 미부담 • 완성품 수출시 수출허가증 불필요 • 현지 자재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 • 내수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금(외화)운용필요 • 자체적으로 원재료 수입 및 국내 자재 조달 • 원재료·완성품 소유권 보유 • 자체적으로 생산계획 결정 • 자기책임 하에 완성품 판매 • 손익에 대한 책임 및 가격, 판매 리스크 직접부담 • 허가증관리품목의 경우 수출허가증 필요 • 현지자재 구매 및 매입 증치세 공제·환급 가능 • 수책내 30% 내에서 세관 보세과의 비준을 받고 납세 후 내수판매 가능

제 3절 중국 가공무역의 제도적 특징

1. 등기수책

(1) 등기수책의 정의

중국해관은 가공무역의 관리 과정중 가공무역수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화 인민공화국 해관가공무역등기수책>(이하무역수책이라 칭한다) 등기수책은 가공무역기업에서 가공무역 합동 비한 하는데 필요하다. 합동변경, 화물의 수출입과 합동핵소(核銷)에 쓰는데 해관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가공무역수책이 있으므로 하여 기업에서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增值稅)를 지불할 필요가 없이 자재를 수입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 수책상의 기록에 따라 수책에 대해 결산을 진행한다.

각별 가공무역 경영기업은 여러개 터미널에서 신고해서 수책운전이 어려울 때 혹은 부족할 때 경영기업에서 제출하여 주관해관검사를 거쳐 가공수책 총책부분 내용을 독립번호가 있는 다른 한편의 "가공무역수책"을 제출한다. 즉 이를 가공무역 등기수책분책이라 한다.

가공무역합동을 기준으로 해서 수책에 기재된 수입 건 명세와 제품 수출 명세, 가공 경영기업이 매번수출시 해관이 수책상 사용하고 있는 수입 건의 수량, 이것들로 보세자재를 관리한다. 모든 제품이 수출할 때 수책상의 보세자재수량을 전부다 써야 한다. 이때 수책도 같이 끝난다. 만일 가공무역수책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입 할 때 가공무역만 있는 면세우대를 향유할 수 없다. 일반무역 방식에 따라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가공과정 중 불량품이 발생하여 수입자재가 전부 수출할 수 없게 되면 이 부분의 자재는 수책에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런 수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할 이무를 가진다. 수책의 유효기간내 해관에서 핵소를 진행할 때 상관되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자재가 원재료 형태를 남아 있을시 수입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얻는다. 다음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증치세율을 곱해서 증치세를 얻는다. 만일 가공과정 중 짝투레기, 부상품, 혹은 내수를 하게 되면 내수가격에 의해 세금 금액을 징수한다.¹⁹⁾

(2) 등기수책의 발급과 관리

등기수책에는 가공무역 계약에 근거한 원재료의 수입내역과 완성품 수

19) 張蓄, 「中國的加工貿易通關制度及風險管理研究」, 2007, pp443~444.

출내역이 등록되어 있으며, 세관은 가공기업이 수출 할 때마다 등기수책 상에서 수출된 원재료의 수량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보세물품의 관리를 행한다. 최종분의 수출이 완료될 시점에는 수입된 원재료 전량이 보세 수책에서 소진됨에 따라 수책이 완결된다. 수입 원재료의 불량발생이나 재고수량 부족으로 수출을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이 분량만큼 등기수책에 잔존하게 된다. 이러한 수출 미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의 등록 말소 수속시 징세조치 된다.²⁰⁾

주관세관에서 공(空)수책을 구입⇒공(空)수책에 신고 기업명을 기입하고 회사 직인 날인 ⇒ 주관 세관에 공(空)수책과 함께 가공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계약 등록 신청 ⇒ 주관세관의 심사 비준 후 세관명과 세관인(印)이 표지에 날인됨 ⇒ 매회 수입, 수출시 마다 수책에 내용 기재 ⇒ 사용이 완료 되면 주관 세관에서 수책정리를 집행한다.

2. 增値稅 증치세(부가가치세)

증치세(부가가치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수입 시 통상 17%가 과세되며, 국내 거래의 경우는(매출 증치세 - 매입 증치세)공제제도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나 국내의 증치세 과세품목을 사용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경우 증치세의 상당액이 매입공제 되지 않고 환급되므로, 이러한 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2004년 1월부터 수출 환급율을 인하조정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3%선으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이로서 환급율이 하향조정된 가공기업의 원가경쟁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중국의 증치세 징세율은 일반적으로 17%이므로 환급율이 13%인 품목의 경우는 4%의 수출세를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1) 來料加工(내료가공) 과 增値稅(증치세)

내료가공은 외국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제품을 재수출

20) Kotra, 「중국 가공무역 매뉴얼」, 2005,10, p31.

하는 무상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유상거래를 전제로 하는 증치세 (면세, 공제, 환급) 방법 중 면세 방법만 적용되고 있다. 즉 외국 위탁기업이 가공무역 기업에 지불하는 가공임에 대해서만 면세된다는 의미이다.

내료가공의 경우, 무상거래의 성격상 부품 재료의 국내조달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관계당국(외경부, 세관)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국내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조달 시 부품재료 공급처에 지불한 매입증치세의 공제·환급은 인정 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단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2) 進料加工(진료가공)과 增值稅(증치세)

원재료를 수입·구매하여 가공제품을 수출·판매하는 진료가공은 유상거래이므로 가공제품의 수출 판매 시는 일반 수출화물과 마찬가지로 증치세의 면세·공제·환급 방법이 적용 된다. 진료가공 방식에서는 원재료 수입 시 증치세가 과세 되지 않으므로 수출 실적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출액이 공제된 금액에 증치 환급세 계산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표2-4> 증치세 환급률 인하 품목

품 목	인 하 율
강재	11 -> 8%
섬유제품(원사, 직물), 가구, 플라스틱, 시멘트, 유리	13 -> 11%
세라믹제품, 피혁제품	13 -> 8%
비철금속	13 -> 5%, 8%, 11%
비기계식 구동차(카트) 및 부품	17 -> 13%

자료 : Kotra, 「중국의 최근 가공무역 규제 관련정보」, 2007, p2.

3. 銀行保證金臺帳制度 은행보증금대장제도(신용장)

(1) 은행 보증금 대장제도의 정의

가공무역 수입원료 은행보증금대장제도는 가공무역 단위를 경영 혹은 기업이 세관의 허가 수속에 따라, 계약 신청금액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가공무역 수입원료 보증금 대장을 개설하고, 완제품 가공은 규정된 가공기간 내에 전부 수출을 한 후, 세관이 계약 결산을 하고, 다시 은행에 의

해 보증금 대장 결산을 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실시는 외교통상부, 세관, 은행 등이 감독관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가공무역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다. 보증금대장은 은행이 세관이 허가한 가공무역 등기 수입 원료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장 기록을 정리 하는 것이다. 대장은 공업 회계전문용어를 빌린 것으로 원래의 그 의미는 대장 분량을 단위로 원재료 발송과 접수와 제품 생산 등 상황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이것은 매 항목 하나씩 단독기록을 한다. 이 기장 방식은 상술한 한건 계약 마다 단독으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과 아주 비슷하다. 수입 원료는 먼저 기장하고, 가공 완제품 수출 후에 세금 관련 계산을 한다.

이 제도는 가공무역의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외교통상부의 심사와 세관의 등기와 면세, 환급관리를 은행의 대장 관리와 결합 시켜 주고 있다.²¹⁾

(2)은행보증금대장제도의 변화

가공무역 원료 보증금 대장 개설의 주요 목적은 가공무역을 이용해 밀수 등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가공무역의 일괄적인 관리를 위함이다. 1995년 국무원이 <가공무역 수입 원료에 대해 시험 은행보증금대장 제도 임시 관리 방법>을 통과하였다.

(3)은행보증금대장의 개설

가공무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공무역 계약서를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문에 제출하여 심사 후 승인을 받아 관할세관에 승인서와 가공무역 계약서를 제출하고 관할세관에서 계약내용 등을 심사한 후 은행 보증금 대장 연계단을 발급한다.

가공무역 업체는 세관의 은행보증금대장 개설 연락서를 관할 중국은행에 제출하여 보증금 대장을 개설하고, 은행은 은행보증금대장등기 통지서를 가공무역업체에 발급하고 세관에도 송부 한다.

가공무역 업체는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보증금대장 등기통지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고 수출가공용 원재료 수입을 개시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21) 김창선 역, 전게서, p248.

가공기한 내에 가공 생산된 제품의 수출의무를 이행하고 가공계약서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에 가공계약 등록말소 수속 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세관은 수출면장 등에 의해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은행보증금대장 등록 말소 연락서를 발급한다. 가공무역 업체는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보증금대장 등록 말소 수속을 하며 은행은 관할세관의 연락서를 확인한 후 은행보증금대장을 정리한다.

은행보증금대장의 등록말소 기한은 세관이 지정한 가공무역 계약 유효기간을 기준 한다. 계약의 연기,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외경제 무역 주관부서 및 세관의 비준을 받은 후, 세관에서 발급한 은행보증금대장 변경 연락서를 중국은행에 제출하여 변경구속을 해야 한다.

가공 생산과정 중 일부가 관할 세관지역을 벗어나 가공 생산된 중간제품은 반입지 세관에 다시 계약 등기수속을 해야 하고 지정된 중국은행보증금 대장을 개설해야 한다.

가공무역 계약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세관의 수출 감독관리 창고나 보세구에 운송하여 보관할 경우, 관할 세관은 창고 또는 보세구 관할 세관의 도착 증명에 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말소를 하며 관련 증표를 가공무역 업체에 교부하여 은행에서 보증금대장 등록 말소 수속을 하도록 한다.

계약기간 내에 수출이행을 하지 않거나 수출 이행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세관에 보증금 대장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향후 이 제도의 적용을 금지한다. 수입 원재료 또는 가공 생산된 제품을 수출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 할 경우 당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를 추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 내수 판매 등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보증금 대장 제도의 이행을 중지하고, 대외경제 무역부에서 당해 업체의 가공무역 경영권을 취소한다.

사실상 은행과 세관은 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은행대장은 세관의 가공무역 기업의 수출입 계약서 항목하의 수입원부자재 금액에 대한 확인 수속이며 수입원부자재의 납세 기록대장에 불과하다.

4. 등급별 관리제도

중국 정부의 막대한 기여 에도 불구하고 가공무역은 여러 문제점을 노

출하였다. 즉 대부분의 가공무역이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저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단순 가공 및 조립수출 단계에 머물고 있어 부속품 및 원자재의 대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와 수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유예 등 정부의 가공무역장려 정책으로 인해 가공무역은 실제로 밀수 와 탈세, 외화도피 등 불법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업체를 등급별로 구분 관리함으로써 그 동안 만연된 밀수 등 위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한편 원부자재 수입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통해 중국산 원부자재 확대 사용을 유도해 나가고자 1999년 10월 1일부터 가공무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가공무역 관리 강화의 주요 내용은 가공무역 업체에 대한 등급별 관리제도 도입과 가공무역용 원부자재의 수입제한 품목 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1) 상품의 분류 관리

가공무역 상품목록을 제시하고 금지상품 종류와 제한상품 종류를 규정하였다.

A) 금지 상품

- 중국 세관규정상 수입금지 상품은 가공무역하의 수입을 금지한다.
- 군용에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생산이 가능한 화학원료의 가공무역 수입은 금지한다. 국제 공약, 조약체결로 수출제한 상품은 가공무역하의 수입을 제한한다.
- 재활용 목적하의 중고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속품의 가공무역 수입은 금지한다.
-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종자, 종묘,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제 등의 가공무역 수입은 금지한다.

<표2-5> 가공무역 금지품목

품 목 분 류	품 목 수
뼈, 뿔, 산호, 등 동물성 생산품	19개
과실 및 사탕수수, 당 등 식물 생산품과 당류	3개
음료수, 광산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 제품	376개

약품 및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26개
목재와 그 제품 및 코르크와 그 제품	256개
양모, 면 폐기물, 합성섬유 폐기물 등	5개
섬유제품, 석고 및 역청 등	7개
철강, 동, 니켈,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 비금속과 그 제품	98개
가구류	14개
합계	804개

자료 : 중국 상무부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2006년 제82호.

<표2-6> 중국 전체 수출입 중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비중
(단위 : 천 달러)

구 분	수 입		수 출	
	전 체	대 한 수입	전 체	대 한 수출
해당품목	10,344,250	1,454,608	27,325,036	2,543,564
전 체	660,221,766	76,873,770	762,326,760	35,116,781
비 중	1.57%	1.89%	3.58%	7.24%

자료 : 중국 해관통계

B) 제한 상품

가공무역 제한상품 종류는 주로 쿼터제 실시 상품으로서 합성수지원료, 화학원료, 면화, 면사, 면직물, 철강 등이며, 중국정부의 수입금지, 수입제한 상품종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혜택정책하의 가공무역상품은 일반 무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 왔으며, 모든 국가기업 지방단체기업, 외국 투자기업, 개인기업들은 가공무역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실제 경영할 수 있는 업종 또한 지나치게 광범하고 명확한 업종 제한이 없는 것이다. 현재는 의류, 방직, 신발, 모자, 완구, 피혁, 금속제품에서 기계, 가전제품, 전자, 화공, 의료기계,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심지어 재배, 양식업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은 20여 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쳐 극소수의 일부 지역만 가공무역 기술 함유량이 다소 재고된 반면 대다수 지역은 아직도 홍콩, 대만, 한국, 일본, 등 국가에서 이전해온 노동집약형 제품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가공품목도 중국 정부가 극히 제한하여야 하는 전자, 방직, 의류, 피혁, 완구, 가구, 금속 제품 등이다. 기술함량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도

중국기업은 노동집약형 생산 공정에만 종사하고 있다. 1991년 중국1위로 부상한 광동성 전자공업의 우세는 주로 홍콩, 마카오의 가공조립업무를 이전받아 최종제품의 생산총량에 있다. 생산기술과 디자인, 주요원자재, 부속품의 조달은 홍콩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혜택정책으로 가공무역의 경영범위는 중국기업이 이미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는 업종까지 보급되었다. 이런 업종의 발전으로 국내산업과 일반무역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국 가공무역의 특수성으로 가공생산제품은 국제적으로 생산 가공기술이 이미 보급되었거나 보편화된 제품종류에만 제한되어 있다.

수입 원료가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편에 속하거나, 세관의 감독이 쉽지 않은 민감한 상품이고, 농약, 분산염료, 펄프, 구리, 정광생가죽 등이다.

제한상품의 가공무역은 은행 보증금 대장 실전(實轉)²²⁾을 실행하고 있다. A류의 기업을 제외한 기타 가공무역 기업이 제한종류의 원료를 수입할 때에 세관은 보증금을 받는다. 기업이 규정한 기간 내에 가공하여 수출하고 관세 결제를 한 후, 보증금과 그 이자는 다시 기업에게 반환한다.

<표2-7> 가공무역 수입 제한 상품

분류	품목
수출입 대응 가공무역 금지	농약 원료, 농약 원약, 농약 중간체를 수입 가공하여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2903510090)등 6개 품목 수출:(3808101910)농업용 살충제 등 16개 품목
	분산 염료를 수입하여 이를 기본 성분으로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경우(3204110000)
	원목, 나무 조각, 나무펄프를 수입가공하여 종이, 판지를 수출하는 경우 수입:(4401100000)등21개 품목 수출:(4801000000)등101개 품목
	구리정광을 수입 가공하여 미단 연구리를 수출 하는 경우 수입:(2603000010)등2개 품목 수출:(7403120000)등8개 품목
가공무역	가공무역 방식으로서의 생가죽 수입금지(41001202090)등32개 품목

22) 은행보증금제도가 실시되며, 관세, 증치세의 50~100%의 보증금 징수됨.

수입금지	납정광, 아연정광 수입금지(납, 아연 제련업 아닌 경우 제외)(2607000000)등2개 품목
------	--

자료 : 중국 상무부

C) 허가 상품

허가종류는 금지종류와 제한종류 이외의 기타 상품을 말한다. C류의 기업 외에는 허가류 상품의 가공무역은 현행 은행보증 금대장 공전(空轉) 제도²³⁾가 시행된다.

(2) 기업의 분류 관리

세관은 기업의 경영관리 현황, 세관법률, 법규준수 현황을 근거로 하여 A, B, C, D 4가지 관리종류를 정하고, 기업에 대해 동태적 분류관리를 실행한다. 기업은 세관으로부터 등기 코드를 받은 후에, 세관은 바로 그에 대한 분류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세관의 기업에 대한 분류 관리는 보세 구역 내 가공무역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의 적용 관리 분류는 기업의 소재지 주관 세관에 의해심의 결정되고, 그 중 A류, D류, 관리의 기업은 세관 총서에 보내 등록되어진다. 세관총서는 A류 관리에 해당하는 기업 명단은 다시 외교 통상부에 보낸다. 그리고 B류 와 C류 관리는 주관세관이 통일적으로 분류하여 본관내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게 된다. A류 와 D류 관리는 세관총서가 통일적으로 분배하여 전국 세관 범위 내에서 실행한다.

A) A류 기업

A류 기업은 세관총서의 허가를 거쳐 세관이 파견인원을 상주시켜 공장을 관리 하거나 혹은 주관 세관과 함께 전자시스템 관리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에 의해 가공무역을 진행하고, 밀수 등 위법행위가 없는 보세공장이거나 혹은 비행기, 선박 등 특수 산업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A류 기업에 대한 특별대우는 세관업무 현장에 전문 창구를 세무신고, 검사, 허가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기업의 요구에 응해 물품검사를 우선 실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담보를 허가한 화물에 대해서 세관은

23) 은행보증금이 징수 되지 않음.

기업이 제출하는 보증서에 의거하여 물품검사를 통과시키고 보증금 납입을 면해준다.

B) B류 기업

A, B, C,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B류 관리로부터 시행되는데 A, B, C 등급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세관총서와 대외무역 경제 협작부에 의해서 결정, 공포되는데 반해 B류 등급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리스트는 작성되지 않는다.

C) C류 기업

C류 기업은 외교 통상부, 세관 총서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이 위법 행위가 있음을 확인한 기업이다. C류 기업에 대해 은행 보증금 실전 제도를 시행한다. 세관은 그 가공무역 원료 수입에 대해 납부해 수입 관세와 수입 부분의 부가가치세의 금액만큼 보증금을 받는다.

D) D류 기업

D류 기업은 세관을 통해 밀수 행위가 있음을 입증 받았거나 3차례 이상의 위법행위를 한 기업이다. D류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에 법에 의해 처분을 하는 것 외에, 외교통상 주관부문에 의해 그 가공무역경영권을 정지 당한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교통상 주관부문이 세관에 그 수출입 업무를 1년 동안 정지 시키도록 통지 한다.

D류 기업의 중점 관리 조치는 D류 기업 관리는 세관 총서의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전국 세관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새로운 가공무역 계약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수출입 화물 증서는 상자 하나 하나 검사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통관 자격이 일시정지 시키고, 기업의 세관감독 화물 운반업무 일시 정지시키며, 기업 보세 보관 업무 자격도 일시 정지된다. 위법 상황이 심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 기업 통관 자격을 취소하거나 기업의 세관 감독관리 화물 운송업무 자격을 취소하며, 보세 축적 업무 자격도 취소한다.

<표2-8> 기업의 분류 기준

등급	분류 기준
A류 기업	2년간 밀수, 위반행위가 없고 관세 체납 또는 가공무역용 제품이 수출 후 등록말소 외무기간을 경과한 사실이 없는 업체. 세관 제출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신고내용이 진실하고 내부회계를 비롯하여 기장제도가 진실하며 수출입 업무가 정상적인 업체. 세관업무 전담 수행자가 지정되고 연속 2년간 수출입 신고 내용의 착오 비율이 5% 이내인 업체. 이상의 조건의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세관원이 상주 하거나 세관과 전산망이 연결된 보세공장 2. 비행기, 선박 등 특수산업의 가공무역 3. 수출액이 3,000달러 이상 또는 수출액이 2,000달러 이상인 대외 무역기업과 수출액이 1,000만 달러(전기기계제품은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제품 제조기업)
B류 기업	A, C, D류 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신규 가공무역 실시 기업
C류 기업	1년간 2회 이상 위반행위가 있거나 탈세액이 5만 위만 이상 50만 위만 미만인 업체관세 등 체납액이 100만 위만 이하인 업체 및 가공무역 제품의 수출 후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 하지 않는 업체기업 명의를 무당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이 수출입 업무를 대행도록 한 업체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대외 무역관리 부서부터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업체
D류 기업	2년간 밀수 또는 탈세액이 50만 위만 이상인 업체 또는 금지물품을 밀수출입한 업체. 수출입 허가증을 위조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한 업체 또는 허위 수출입 신고 등을 한 업체. 세관 감독 관리 화물의 운반도구에 밀수품 등의 은닉이 가능한 시설을 한 업체 또는 관세 체납액이 100만 위만 이상인 업체. 대외 무역관리 부서로부터 대외 무역허가를 일시 정지를 당했거나 취소된 업체. 밀수 범죄를 구성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

자료: 안재진, 「중국무역정책의 주요변경내용과 대응방안」 2007, p 227 .

제 3 장 중국 가공무역제도 특징과 문제점

제 1 절 중국 가공무역제도의 특징과 발전 원인

1. 중국 가공무역제도의 특징

(1) 지역적 분포

중국 가공무역은 동남 연해지역에서 발전하기 시작되었으며, 그 중 가공무역 주요 밀집지역은 광둥성, 복건성, 상해시, 강서성 그리고 산둥성이 있다.²⁴⁾

중국내 가공무역 밀집지역의 주요 특징은 첫째, 지역별로 입주기업의 국가 및 지역의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즉, 광둥성과 복건성은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들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또한 산둥성은 한국과 근접하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²⁵⁾

둘째,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특혜정책에 따라 밀집지역 명확히 구분되기도 한다. 1979년 7월 중국 정부는 광둥성과 복건성에 4개의 경제특구 개설 허가를 내주었다.²⁶⁾ 1984년 8월에는 대련, 진황도, 천진, 연대, 청도, 연운항, 남통, 상해, 영파, 온주, 복주, 광주, 진강, 복해 등 14개 연해항구 도시를 개방하였으며, 1987년에는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추가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서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가공무역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2) 외국기업 우대 특혜제도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의 발전과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다양한 특혜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특히 중국 정부는 관세

24) 顾建清, 전개서, p.20.

25) 2007년 6월 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 건수는 16,969건이며, 이중 산둥성에 대한 투자 건수는 6095건으로 총 투자 건수 대비 3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요녕성 2343건, 천진시 1479건 등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특별조사자료 2007-1, 2007.12, pp.115-116 참조.

26)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는 광둥성의 선전시, 주해시, 산둥시 그리고 복건성의 하문시 등이다.

및 수입수량제한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면서도 가공무역의 발전을 위해 변칙적인 각종 특혜제도를 수립·시행하였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정부는 일반무역에 대해 수량제한조치, 대외무역권 허가제도²⁷⁾, 국내 은행 외환매입제도 등을 통해 일반무역을 엄격히 제한 통제하였다.

반면 가공무역을 통한 수입 물품은 중국 세관 제한수량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대외무역권 발급이 면제되었으며, 가공비로 입금된 외화의 은행매입환율이 일반무역에 다른 외화 매입환율 보다 우대 환율이 적용되었다.

중국 정부는 1992년 이후 일부 가공무역 특혜제도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일반무역방식을 통한 무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특혜를 부여하였지만 가공무역에 부여된 특혜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보였다.

첫째, 관세면제이다. 가공무역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원부자재 및 공장 건설용 원부자재의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둘째, 내국세 감면이다.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증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일반무역을 통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중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17%의 증치세를 징수한 후 수출 시에 9%를 환급되며, 수입 원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도 수입 시 관세 및 17%의 증치세를 납부하고 재수출시 9%의 증치세만 환급된다.

셋째, 기타 세금혜택이다.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사업 개시 후 1년에서 2년까지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기간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비중이 생산총액의 70%이상인 경우 기업소득세 30%가 감면된다.

넷째, 지방정부 특혜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자기 지역의 가공무역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았다.

27) 1980년대 초 중국은 전국을 하나로 하는 고도로 집중된 대외무역총공사에 의한 독점무역의 국면을 타개하고, 각 성 및 직할시 소속의 대외무역공사가 대외무역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중국대외무역공사의 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 하반기부터 1987년까지 2200여 개의 지방 대외무역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비준을 받았다. 이는 1979년에 비해 11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1988년 중국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에 수출권을 위임하고 수출액 중 일정액을 중앙 정부에 납입하도록 하는 대외무역도급경영책임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3년 말 대외무역권을 획득한 기업을 8000여 개에 달하였다. 浩琳, 「我国对外贸易收购制, 代理制和自营制的市场前景之比较研究」, 郑州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pp.4-9
윤충원·하현수·박종철, “중국 대외무역대리제도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저널」 제1권 제1호, 2009, 9, p.4 재인용.

대표적인 가공무역기업 우대조치로는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제도이다. 즉, 이들 기업에 대해 3년간 지방세 납부가 면제하고 이 기간 만기 후 가공무역 기업이 흑자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면제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가공무역 기업의 공장건설에 따른 건축세를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10%,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면제하였다.²⁸⁾

2. 발전 원인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가공무역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²⁹⁾ 외국기업으로서는 투자보다 부담이 덜하고 원부자재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리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조립생산 기지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외화 획득뿐만 아니라 신진기술 습득과 설비의 도입이라는 경제적 이점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³⁰⁾

이밖에 중국 가공무역의 발전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제 분업의 발전으로 원자재와 부속품 생산지, 제품가공지역과 소비지역이 분리되었다.

둘째, 중국은 인구 당 평균 자원이 빈약한 국가로서 공업화 과정에 원부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을 결합시킨 무역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 국영기업들은 독자적인 대외무역 파트너를 구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내료가공 방식으로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넷째,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의 국제화교자본의 해외경영방식도 중국가공무역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다섯째,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에 대한 특별혜택정책도 가공무역 발전

28) 陶涛, “金融危机对中国加工贸易转型升级的影响”「中国经济」, 2009年第3-4期, 2009.3, p22

29)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의 가공무역 동향과 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 3, p. 1.

30) 전환우, 「중국 가공무역금지 조치 영향 분석: 한·중 교역에 대한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Uint, 2008. 5, p. 1.

에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여섯째, 중국의 1995년 이후 두 차례 실시한 수출증치세 환급비율 인하는 중국 내 기업들의 무역방식을 일반무역방식에서 진료가공 무역방식으로 전환을 촉진시켰다.³¹⁾

이처럼 중국 가공무역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 내부적인 요구와 중국 외부적인 요구가 서로 일치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제 2 절 중국 가공무역제도의 문제점

1. 제도실시의 연기배경과 외자기업들의 반응

신가공무역관리제도는 외자기업에 대한 밀수단속, 탈세 방지 및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당초 1999년 6월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관련 규정 미비와 외자기업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 10월 1일로 연기, 실시되고 있다.³²⁾ 이는 외국계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공무역형 수출업체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혼란에 따른 실시의 연기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는 신제도 실시의 공포 후 실시까지의 기간이 짧고 준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보증금대장의 실지급(實支給)에 대해서도 관계부문으로서의 대외경제무역관리기구, 세관, 은행의 3자간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³³⁾

셋째는 정부 내부의 개혁파와 보수파간 대립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³⁴⁾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된 지금의 상황에도 관련 세칙 미비와 운용상 혼란으로 외자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즉, 외자기업들은 가공무역관리제도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외자기업에게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한다

31) 정환곤,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8.p.7.

3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1999년 6월호 p.87참조.

33) 横山則夫, 前掲論文, pp.6-11.

34) www.chinatowngroup.com/16chinabiz/cb-991108-jiagong.html

는 점에서 중국의 외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WTO 가입 노력과 개혁정책에도 상반되는 제도란 평가를 내려놓고 있다. 특히 정부 내 보수성향의 부서들이 세력화해 국유기업의 이익을 대변, 향후 중국 경제의 시장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들은 이 제도가 수입 보증금의 선납을 요구하고 있어 자본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이전부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즉, 이 제도에 의해 정부가 보증금에 금리를 적용시켜 준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업 운영자금의 사용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과거 증치세 환급의 전례를 보면 중국 정부가 실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증치세 환급의 경우 환급분을 장부상 이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본 제도에서도 차기 원재료 수입 시까지 보증금을 정부가 보관하는 식의 장부상 환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자금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단기 운영자금 사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

2. 세칙과 운영상의 문제점

제도적인 면에서 세칙과 운영상 문제점도 하나둘 노출되고 있다. 첫째, 제한품목에 있어서 당초 6월의 초안에 비해 품목 수는 증가 (설탕, 식물유, 천연고무, 양피)한 반면 수입규모가 큰 일부 원자재(면직물의 프린트, 염색천 등)는 오히려 제외되었다.

둘째, 무엇을 보증금의 담보로 할 수 있는가가 불명확해 새로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대외경제무역협작부 관계자는 당초 전액 현금이었던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생산설비 등의 자산을 현물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또 현물에 대한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평가방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법률적용으로 인하여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등급 설정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외자기업간의 암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당초 제한품목을 설정할 때 중국 산업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의 경우 중국 국유철강회사

들이 내수경기의 침체로 금년도 판매가 부진하자 외자기업의 내수판매를 저해하기 위해 강제를 제한품목에 넣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세관별 적용기준 및 해석의 상이와 세관원들의 이해부족

가공수출기업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상과 같은 제도적 불합리 내지는 모순만이 아니다. 중국 최대의 가공무역기지인 광둥성 내에서도 세관별로 적용기준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세관 내에서도 세관원에 따라 규정해석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중국 세관원들의 마구잡이식 단속사례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들의 말 한마디는 여전히 법(法)이다. 따라서 아무리 제도와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도 세관원이 "수입원자재와 수출완제품의 내용이 다르다" 또는 "원자재와 완제품의 수량이 맞지 않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르면 수만 불의 벌금은 물론 B등급이 C, D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어떤 세관원들은 업체들보다도 보증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폴리에스테르의 경우, HS CODE 기준으로 39011000과 39012000 등 두 품목만이 보증금납부대상인데도 세관원이 3901류의 기타 품목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³⁵⁾ 결국 세관원들의 이해부족과 주먹구구식 해석 때문에 동일 품목, 동일 물량의 원자재수입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 실제 보증금 금액이 1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게 된다.

4. 분류기준상의 문제

원래 중국당국은 가공무역업체를 구분하여 관리함에 있어 공개, 공정, 투명한 원칙을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하며, 기업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분류하지는 않으며, 기업의 경영상태와 준법정도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되는데, A급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B급 이상을 유지할 것이며, A급 기업이 취급하는

35) <http://galaxy.channeli.net/wreporter18/hknewsbox/wjnews-99-42.htm>

가공무역량은 앞으로 전국 가공무역 총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결정된 기업분류 상황을 보면 전체 가공무역 업체 중 93% 정도가 B 등급이며 나머지가 A, C, D 등급이나 C, D 등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난 1999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 중국 가공무역 보증금 제도에 따라 기업등급을 분류한 결과 B급 이상이 9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등급별 관리 대상기업이 A급5%, B급 93%, C급 1.8%, D급 0.2%로 분류됐다고 전하고 있다.³⁶⁾

이번의 조치는 겉으로 중국 정부가 무보증금제도를 확대하여 가공무역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중국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한국을 포함한 외국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중국정부가 비록 공개, 공정, 투명의 원칙을 천명하였지만, 실질적인 분류 근거는 경영상태와 준법정도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은 B급 이상을 유지할 것이며, A급 기업이 취급하는 가공무역량은 앞으로 전국 가공무역 총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기업 등급의 비율을 중국정부의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³⁷⁾

36) 한국무역협회, 무역일보, 1999년 10월 5일.

37) 실제로 광둥성 심천시에서는 일본의 한 대형 제조업체가 사소한 실수를 해 C급으로 분류돼 보증금의 적립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 관련 부서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진출 기업에 지방주의가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4 장 중국 가공무역 제도와 한국 수출기업의 관계

제 1 절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1. 보증금 환원기간의 장기화

가공무역 기업은 원부자재 수입 시점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간 이내에 수입원자재 전량을 가공해 수출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다. 중국세관이 허용하는 가공무역 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원자재 수입 시점부터 수출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보증금 예치기간이 최장 6개월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수출을 완료하면 보증금 환급에 앞서 우선 세관의 보증금 환급심사라는 확인 절차가 있는데 이 기간은 빠르면 1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가량 소요된다. 실제 보증금 예치기간은 9개월이 될 수도 있다.

2. 2회분 보증금의 예치발생

또 하나의 문제는 대부분의 가공무역 들이 기존 수입물량을 완전히 소진하기 전에 원자재를 추가로 수입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년 중 내내 2회분의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둬야 하는 것이다. 세관이 세수 확대 또는 기타 목적으로 심사기간을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가공무역 기업은 심지어 3회분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3. 보증금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가중

1999년 12월에 은행의 보증금 대장 제도가 일부 완화되어 현금 대신 다양한 형태의 보증금이나 담보가 가능하여 기업의 부담은 조금 완화되었지만, 보증금대장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보증금대장 발행 가능은행이 중국은행 1군데에 국한되어 중국은행과 거래하지 않은 외자기업은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중국은행의 보증금대장 발행은 자체영업에 관련된 것으로 담보문제에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은 보증금대장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제한품목의 변경, 조정과 기업 분류 조정, 특히 1999년 12월 20일 A류 기업 분류와 C류 기업 분류에 관한 신 규정으로 많은 가공무역기업이 보증금 적립이 불필요하게 되었지만, 지역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다르고 실제 보증금 부담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

4. 수출기업의 비용 상승과 대 중국 수출의 타격

1999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행 가공무역 관리제도는 중국정부가 일부 민감 품목,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유보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업체들의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3국간 무역 및 원자재의 대 중국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가공무역 관리제도의 본래 취지가 밀수와 수출원자재의 불법적인 내수 전용을 방지하는데 있다지만 수출기업의 비용을 상승시켜 중국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많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원자재 수입시 보증금 납부로 인한 자금부담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부분 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용증대 효과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동남아 등지로의 생산기지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 가공무역 기업의 상당수가 원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재료를 수입한 후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 업체들은 원재료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적어도 20% 이상의 원가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어 심각한 경우에는 가공무역을 수행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수출 마진율이 낮은 원사, 직물 등 섬유류의 경우 환급률이 소폭 인하될 경우에도 수출채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금속 광물, 금속도기, 가죽제품 등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취

소된 품목과 방식, 가구, 강제품 등 환급률이 인하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모두 수익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³⁸⁾

5. 중국진출 현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수출 환급률 인하와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의 경우 수입관세와 증치세 부담이 가중됨으로서 가공무역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공무역이 금지되어있는 피혁 가공업체는 물론 중국 내 피혁제품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피혁의 수입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가공무역 금지 및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가 섬유와 신발 업종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의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내 가구 제조업체, 속가공업체 등 중국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진출한 기업의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³⁹⁾

제 2 절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전략

1. 정부측면에서의 대응전략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확대와 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취소조치는 향후 국내 무역업체들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가공무역 금지품목, 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취소 품목에 대해 중국과의 가공무역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 및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2006년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 에서도 응답 업체 중 상당수 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정책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정부에서는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한·중 통상장관 회담 등 정부 간 협의 시 한국기업에 대한 정책 집행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

38) 한상현, 전게서, p18.

39) 양평섭, 「중국의 수출관련 정책변화와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2006, pp7~9.

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제한물품 등의 정확한 리스트를 조속히 확보하여야 하는 한편 업체등급 분류 시 가급적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되도록 현지 진출 업체들에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불합리 하도록 책정된 기업분류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수정요청과 아울러 일본, 대만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관련 업종의 신규진입에 따른 추가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의 산업정책변화에 대한 적극적 계도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 기업측면에서의 대응전략

대 중국 가공무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대해서는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 가능여부를 검토, 전환하여 수출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가공무역을 계속 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 비 금지 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가공무역 수입금지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비하여 현지법인의 원자재 조달 현지화 노력도 강화 하여야 한다.

중국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에 대비하여 수출 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환급률이 높은 품목으로 변환을 도모하여야 하며, 실제로 중국기업 및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은 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로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 즉 중국의 수출 규제로 생산제품이 내수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기업 간 경쟁심화로 제품 및 생산 방식의 고도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치세 환급률 추가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증치세 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는 중국정부가 통제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수지 및 외환 보유고의 추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관련 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무역, 투
기정책 전반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사전 준비가 필
요하다.

세 번째 재분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환급률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
추가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공무역 관리제도의
도입이후 최근 중국세관은 밀수와 기타 부정한 방법의 수출입 거래를 전
담하기 위해 경찰국이 신설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가공무
역 제품 중국내 불 판매, 수입물품가격저가신고 등의 혐의로 중국세관으
로부터 조사 받는 사례와 현지기업 사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
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 스스로도 가공무역용수입원자재 및 가공제품의
중국내 판매금지, 수입원자재사용 후 규정된 기한 내 보고 이행, 물품 수
입시 정확한 가격신고 등으로 세관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 이다.⁴⁰⁾



40) 안재진, 전게서, pp236~238.

제 5 장 결 론

지난 10여 년간 한·중 교역과 투자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기인된다. 지리적 근접성, 산업 및 기술 발전단계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보완성,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지속,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 등의 요인이 양국 간 경제 관계 발전을 이끈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은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것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여건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은 보다 선별적인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경쟁 및 보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이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 조립한 소비재를 한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지금의 무역 방식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수출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수출관련 대내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공무역 금지품목 지정,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정책에 있어서 몇몇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에는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을 인하한데 이어 11월에는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하였다.

이번 무역정책 변화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입장에서 이와 같은 최근 중국의 무역 정책 변화는 중국의 일회성 정책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기조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중국 무역정책의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업 및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과 중국의 최근 가공무역 제도에 대해서 고찰한 후 중국가공무역 제도 및 증치세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 배경 및 내용을 분석하여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한국 수출 기업 및 중국 내 가공무역 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중국 가공무역제도 변경내용은 첫째, 자원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무역흑자의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위안화 절상압력을 완화하고 비효율, 과당경쟁 업종을 도태시켜 산업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시경제 조정차원에서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조정하고 있다.

둘째, 국제적인 원자재 및 자원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자원, 에너지의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내수 판매를 우선시 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주요 자원과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청정생산 촉진법, 환경 영향 평가법, 제품 생산자 책임제도 등 환경 관련 규정을 강화해가는 추세이며, 피혁, 염색가공, 목탄, 축전지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입 규제를 강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자는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가공무역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이와 같은 무역정책의 변화는 현지 진출 상당수 한국 가공무역 종사기업의 자금부담 등을 초래하고 한국 대중수출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정부 입장에서 중국 무역정책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변화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 가공무역을 수행하는 한국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정부간 협의시 한국기업에 대한 정책 집행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산업구조조정정책, 자원보호정책 등 중국의 정책과 제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진출기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환급을 인하, 가공무역정책변화로 중국내 가공무역을 진출한 기업에 대한 퇴출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한국의 임가공기업의 진출이 많은 산동성, 요녕성, 광둥성 등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직·간접적으로 로비를 통해 진출기업을 지원하는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 중국 가공무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가공무역 금지 및 증치세 환급률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수집, 무역방식의 전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중국 가공무역제도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줄이고 더 나아가 기업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양평섭,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가공무역으로 단순 하청공장으로 전략할 것 우려”, 「Chindia Journal」, 2007. 1,

Kotra,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기획조사 06-065, 2006.11,

이승진 · 양평섭,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KIEP오늘의 세계경제」, Vol. 9 , No.11, 2009.4,

Kotra, 「전게서」 2006.11,

양평섭,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한국 대중 수출입 돌파구는—중서부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고 내수 시장 뚫어라”, 「Chindia Journal」, 2008.6,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의 가공무역 동향과 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 3,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의 가공무역 동향과 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 3,

전환우, 「중국 가공무역금지 조치 영향 분석: 한·중 교역에 대한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Unit, 2008. 5,

정환곤,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8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수출입은행특별조사자료2007-1, 2007.12, pp.115-116참조.

윤충원·하현수·박종철, “중국 대외무역대리제도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저널」, 제1권 제1호, 2009,9

KOTRA, 「중국 가공무역 매뉴얼」, 2005,10

김창선 역, 「전게서」

중국 상무부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2006년 제82호

안재진, 「중국무역정책의 주요변경내용과 대응방안」, 2007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1999년 6월호

한국무역협회, "무역일보, 1999년 10월 5일."

안재진, 「전계서」 "수출가공구 가공무역 관리 집행방법 제6조"

한상현, 「전계서」

양평섭, 「중국의 수출관련 정책변화와 한. 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2006,

외국문헌

顾建清, 「中国加工贸易研究」, 复旦大学出版社, 2008,

1978年7月“开展对外加工装配业务试行办法”

1979年9月“开展对外加工装配和中小型补偿贸易办法”

1986年10月“关于鼓励外商投资的规定”

1987年9月“关于抓住有利时机进一步发展来料加工装配等业务请示
的通知”

1992年7月“对外商投资企业进出口货物监督和征免税办法”

江华,黎国林, “我国加工贸易产业结构升级研究”, 「商业研究」, 总第387
期, 2009, 7,

头瑞林, “对后危机时机我国加工贸易发展的几点思考”, 「中国经贸」
2009年第11期, p.12

浩琳, 「我国对外贸易收购制, 代理制和自营制的市场前景之比较研究」,
郑州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pp.4-9

陶涛, “金融危机对中国加工贸易转型升级的影响”, 「中国经济」, 2009年
第3-4期

張蓄, 「中國的加工貿易通關制度及風險管理研究」, 2007,

橫山則夫, 「前掲論文」



< Internet 문헌 >

<http://www.chinatowngroup.com/16chinabiz/cb-991108-jiagong.html>

<http://galaxy.channeli.net/wreporter18/hknewsbox/wjnews-99-42.htm>

